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0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보장 및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(안 제4조 및 제5조)
- 3)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- 4)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(안 제8조 및 제9조)
- 5)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및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6)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지원 및 업무의 위탁(안 제12조 및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 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가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)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(안 제4조 및 제5조)

- 장애예술인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종합 시책 수립 등의 책무를 규정함
-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함

다)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
- 장애예술인 활동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
-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,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, 공연 및 전시활동, 창작물에 대한 판로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함

라)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(안 제8조 및 제9조)

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및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(안 제10조 및 제11조)

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지원 및 업무의 위탁(안 제12조 및 제13조)

-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(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), 제10조(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), 제11조(장애예술인 고용지원), 제12조(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), 제13조(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)의 규정을 적용하여 규정함

3)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활동을 촉진하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